



## 산림재난방지법

[시행 2026. 5. 12.] [법률 제21622호, 2026. 5. 12., 일부개정]

산림청 (산림재난총괄과) 042-481-4279

산림청 (산불방지과) 042-481-4251

산림청 (산사태방지과) 042-481-4033

산림청 (산림병해충방제과) 042-481-4076

**제24조(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)**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2.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
**제77조(벌칙)**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·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
  2.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